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

발의연월일: 2020. 6. 8.

발 의 자 : 임종성ㆍ이용호ㆍ김철민

이탄희 · 문정복 · 송석준

김정호 · 소병훈 · 김경협

윤후덕 • 윤관석 • 전용기

홍성국 · 이원욱 · 양정숙

김유덕 • 박 정 • 송재호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되어야 하나,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의 경우 보행자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교통사고의 위험 및 통행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행자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법률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을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셋 이상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행자길 설치, 교통망 구축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	을 포함한 셋 이상의 사항
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	
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교통처리계획</u>	7. 보행자길 설치, 교통망 구축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